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
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합조사의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보고를 하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합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및 보고하도록 함(제7조의4부터 제7조의9까지)

나. 제작결함조사의 본조사 기간을 설정하고, 추가조사 등 본조사 기간 연장 필요시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치 및 보고하도록 함(제7조의8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
- 팩스 : 044-201-558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(전화 044-201-38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